

製造業과 서비스業間의 賃金隔差 發生 原因*

裴 震 漢 **

논문초록 :

우리 나라 제조업노동과 서비스업노동 사이의 純賃金隔差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이 노동조합의 영향력, 독과점이윤, 또는 관측되지 않는 노동력의 질 등 보다는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수익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 고수익성은 다시 서비스생산물 가격의 급등 등에 기인한 과도기적 초과이윤이나 독과점이윤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실현이익의 분식과 은폐, 그리고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에 기인하며,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이러한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도록 하거나 근로자의 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效率性賃金의 지급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제조업 경공업부문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稅前利潤率을 계산·분석한 결과 제조업 경공업부문의 세전이윤율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세전이윤율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전통적 서비스업종의 높은 탈세가능성과 그로 인한 효율성임금의 지급의 간접적 증거로 해석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신용거래제도 및 조세제도의 미비와 불완전성이 도·소매·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성 서비스업종에게 실질적으로는 낮은 조세부담률의 형태로 특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온 결과 성립한 현상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핵심주제어 :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 탈세, 효율성임금

경제학문현목록 주제분류 : J3

I. 서 론

최근의 우리 나라 노동시장사정에 의하면 제조업 生產職勞動의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소비성 서비스업의 급속한 성장과 아울러 서비스업종으로의 노동력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귀중한 평을 해주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 서울대 노동경제연구회 회원님들, 국민대 유재우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래도 남아 있는 오류들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규진입 및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산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된다는 것은 고도성장이나 성장잠재력의 제고, 물가상승의 억제, 그리고 國際競爭力의 향상이란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현상이다(졸고(1996) 참조).

그런데 이러한 제조업부문 또는 생산직부문으로의 노동공급감소와 소비성 서비스업부문으로의 노동공급증가는 광공업보다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賃金프리미엄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남성일(1996)의 '고임금·인력난' 논의와 조우현·강창희(1996)의 '유휴인력과 인력난 병존' 논의는 최근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홀륭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성일(1996)은 제조업의 인력난을 단순히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부족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제조업의 인력공급 부족문제에 대한 국민경제적·거시적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제조업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력이 무슨 이유로 다른 산업, 예컨대 소비성 서비스업종 쪽으로 배분되어 가 버리는가?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조우현·강창희(1996)도 제조업의 인력난을 주로 제조업소속 대기업의 고임금 탓으로 돌리고, 중소기업으로 가야할 노동력이 待期失業상태 또는 遊休人力상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결코 제조업내부의 임금구조에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고, 또 이 문제의식이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서비스업까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 임금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그 해법이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종에 임금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구체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부문을 비롯하여 주로 서비스업부문에 왜 뚜렷한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좀더 명확한 해명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제조업노동과 서비스업노동 간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이며, 또 이것이 최근까지 어떤 추세를 보여왔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임금격차의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아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노동력에 일종의 임금프리미엄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효율적인 산업간 노동력배분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함의를 얻어 내자는 것이다.

II. 서비스업종의 高賃金현상

—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특수성 —

최근 우리 나라의 산업별 賃金構造는 대부분 산업별 총평균임금을 단순히 비교하는 수준에서는 매우 빠르게 그 격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표 1〉 참조). 특히 전형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사회·개인서비스업의 평균임금수준이 제조업 평균임금과의 격차면에서 매우 빠르게 감소하였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는 이제 제조업과의 임금격차가 거의 제거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금융·보험·부동산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 정도가 제조업평균에 비하여 아직 각각 24.3%와 34.4% 만큼씩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임금격차 축소현상이 총평균 임금의 단순비교의 결과이며, 실제 근로자개인에 관한 자료로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종 등 큰 임금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屬人的 特性 및 일자리특성들을 통제하는 경우 매우 다른 산업별 임금구조 추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특히 경공업부문으로의 노동공급, 그래서 그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노동수요가 상당 수준 존재하더라도) 서비스업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부문에서 노동수요 및 고용(노동수요 증가에

〈표 1〉 산업대분류별 임금구조 추이

(제조업 월임금총액=100.0)

연도	광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	사회·개인서비스
1980	138.1	192.5	175.5	143.5	138.1	191.8	187.1
1985	120.4	213.0	148.1	137.8	126.7	192.2	179.3
1990	102.5	161.4	126.1	110.8	98.8	144.2	139.9
1996	109.4	152.0	119.0	101.8	99.9	124.3	134.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労動統計』, 1997, p. 41에서 작성.

부응하는 노동공급 증가의 결과)의 급속한 증가가 견지되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려는 것이고,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취업에 특별한 인적자본이나 장기간의 교육·훈련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들이 손쉬운 선택대상이 될 것이므로, 산업별 임금구조의 추이를 분석할 때 분석범위를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사이의 임금구조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¹⁾

1. 임금격차 추정모형과 사용자료

근로자 개인자료에 의한 산업별 임금구조는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테이프자료로써 분석할 수 있으며 산업별 임금수준 및 격차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3~5년간의 간격을 두면서 수년에 걸치는 시계열분석도 필요하다. 우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구조를 비교하고 그 격차를 추정하기 위해서 J. Mincer(1974, pp. 81-94)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勤勞所得函數(earnings function)를 설정할 수 있다.

$$\ln W = f(R, U, A, T, ED, SIZE, JOB, IND) \quad (1)$$

여기서, $\ln W$: 각 근로자 근로소득의 자연로그

R : 산업체해율

U : 노동조합 가입여부

A : 근로자연령

T : 근속년수

ED : 교육수준

$SIZE$: 사업체규모

JOB : 직종

IND : 산업더미변수

식에서 A , T , ED 그리고 U 를 도입하는 것은 각 근로자의 주요 속인적 특성이 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일자

1)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개인·사회서비스업이 전체 3차산업 즉,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기준으로 GDP생산(경상가격기준)은 23.5%이고 취업자는 64.2%(남자 53.1%, 여자 80.6%)에 달한다. 이 산업들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1995년 기준으로 GDP생산은 15.6%, 취업자는 41.1%(남자 34.0%, 여자 51.6%)이다. 생산기준으로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으나 고용기준으로는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특성변수로 R , SIZE, JOB, 그리고 IND 등을 도입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업체 규모간 및 직종간 임금격차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감안된 후의, 노동력공급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제조업과 주로 소비자서비스업간 순임금격차를 적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근로자의 성별로는 상당히 다른 임금격차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유추되므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는 표본을 분리하여 따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식 (1)을 추정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편제하는 1986년, 1990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와 1994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테이프자료를 사용하되 분석범위를 광공업, 도·소매·음식·숙박업(1994년의 경우는 소비자용품수리업 포함),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1994년의 경우는 공공서비스업 포함) 종사 근로자에 국한시키고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²⁾ 특히 1986년과 1990년의 임금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졸고(1994)에 따라 노동부의『'91 産業災害分析』에서 얻을 수 있는 산업별·사업체규모별 災害者千人率(근로자 1,000명당 재해근로자수) 변수 R 을 도입한다.

임금함수 추정에서 W 로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테이프자료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사용하는데, 이 때 임금총액은 구체적으로 월정액급여+월초과급여+(前年度 연간특별급여액÷12)로 하고 근로시간은 월정상근로시간+월초과근로시간으로 한다. U 는 조합원의 경우 1, 비조합원의 경우 0이 되는 더미변수이고, A 는 연령, T 는 근속연수인데 실제 추정모형에는 이들 변수의 효과의 비선형성을 감안하여 A^2 과 T^2 변수도 함께 도입한다. ED 는 학력변수로서 中卒(고교중퇴 포함), 高卒(대학교중퇴 및 전문대학 졸업 포함), 大卒以上の 세 범주로 나누어 고졸더미변수 ED_h , 대졸더미변수 ED_c 로 각각 도입한다.

한편, 재해자천인을 R 변수는 산업별·사업체규모별 災害者千人率 자료가 원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테이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변수를 테이프자료와 결합시키는 데에는 두 자료의 산업분류 및 사업체규모분류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직종별임금실태조사'의 산업분류는 세 자리수 표준산업분류이

2) 남녀를 구분하여 따로 추정하는 것은 첫째, 우선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는 남녀 간 노동시장의 분단이 심하며 둘째, 성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미 추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별 임금격차가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평균되어 나타나므로 정확한 산업별 임금격차를 포착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 사업체규모분류는 상용근로자수 규모로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의 5분류이지만, 『'91 산업재해분석』의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 않고, 또 상용근로자수 기준사업체 규모분류도 좀더 세세하면서 다소 차이가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산업분류의 연결작업은 박영범(1991)에 따르되, 산업분류의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출고(1994)의 방식처럼 대부분의 산업은 두 자리수 산업분류로 중간집계하여 연결시키고 사업체규모분류는 『'91 산업재해분석』의 재해자천인율자료를 '직종별임금실태조사'의 분류에 맞게 재계산함으로써 연결시킨다.

*SIZE*변수는 이미 언급한 대로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분류에 따라 분류하되 상용근로자수 1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의 4범주로 분류하고 100-299인 규모 더미변수 *SIZE1*, 300-499인 더미변수 *SIZE2*, 500인 이상 더미변수 *SIZE3*을 도입한다.

우리의 연구목적에서 산업간 임금구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므로 추정모형에는 반드시 *JOB*변수와 *IND*변수가 모두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직종과 산업변수의 경우는 1986년과 1990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와 1994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이에 분류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절히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2년 이후부터 거의 대부분의 노동력통계가 개편된 산업분류와 직종분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 사이에 一貫性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먼저 산업분류의 경우 제조업 중 경공업부문을 기본범주로 삼되, 1986년과 1990년의 경우에는 중화학공업부문 더미변수 *IND3H*, 도·소매·음식·숙박업부문 더미변수 *IND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부문 더미변수 *IND8*을 도입하고 비슷하게 1994년의 경우에도 중화학공업부문 더미 *IND3H*,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IND5*를 부여하고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IND8*을 도입한다.

직종변수인 *JOB*변수에서는 1986년과 1990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의 경우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를 *JOB1*,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는 *JOB2*,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는 *JOB3*라는 더미변수로 나타내고 이 이외의 직종들(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업·임업·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을 모두 基本範疇로 처리하며 직종더미변수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1994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서도 전문가직종과 기술공 및 준전문가직종 범주를 *JOB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직종 범주를 *JOB2*, 사무직종 범주를 *JOB3*으로 나타내고, 그 나머지 직종들(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을 기본범주로 삼는다.³⁾

2. 추정결과

이상의 모형과 자료로 근로소득함수 식 (1)을 추정한 결과가 <표 2>와 <표 3>이다. <표 2>에서 $\ln W_{KM1}$, $\ln W_{KM2}$ 는 각각 1990년의 근로소득함수 추정결과인데 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ln W_{KM1}$ 식은 직종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이고 $\ln W_{KM2}$ 식은 직종더미를 도입하여 직종을 통제한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ln W_{KM3}$, $\ln W_{KM4}$ 는 1994년 근로소득함수 추정결과이며, $\ln W_{KM3}$ 는 직종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 $\ln W_{KM4}$ 는 직종더미를 도입한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한편 $\ln W_{KM5}$ 식은 $\ln W_{KM4}$ 와 동일한 모형인데 다만 분석대상을 30세 미만 노동력으로 한정시켜 추정한 결과이다. 이 식을 추정한 깊은층 노동력의 산업별 임금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⁴⁾ 한편 1986년의 경우는 추정모형이 1990년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데 지면제한으로 그 추정결과는 산업별 임금구조의 추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문에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표 3>의 추정식들도 <표 2>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다만 분석대상이 여성인 기 때문에 추정식 명칭이 $\ln W_{KM}$ 에서 $\ln W_{KW}$ 로 바뀌었을 뿐이다. <표 2>, <표 3>의 추정결과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임금구조에 대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 준다. 우선 추정결과들로부터 근로소득함수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年齡과 勤續年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강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하여 연령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근속연수의 효과는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
- 3) 직종을 이렇게 세 직종만 통제한 것은 이 세 직종과 나머지 직종들 사이의 구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합(matching)에 의해 이리저리 변경될 수 있는 범주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고학력이나 전문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사용자는 마음대로 판매·서비스직이나 일반 생산직으로 배치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 4) 모형에 나이가 독립변수로 도입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다시 젊은층을 분리시켜 추정하는 것은 전연령을 한꺼번에 추정하면 연령효과가 고연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균되어 나타날 뿐 이므로 이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효과는 남성의 경우 최근 陰의 값으로 전환되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그 부호가 음은 아니지만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약화되었다.⁵⁾

學歷의 효과와 事業體規模의 효과도 역시 강력하게 포착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규모효과는 대체로 남성보다 약하지만(직종통제가 없을 때 SIZE2는 남성보다 강하다) 대졸학력의 효과는 남성보다 강하다는 점도 나타난다. 아울러 대졸학력의 효과가 그 동안 남녀 모두 시계열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해 둘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최근까지 흔히 피상적으로 지적되어온 기업규모별 총임금격차 확대현상이 사실은 여러 가지 속인적 특성 및 일자리특성 변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추세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ln W_{KM2}$ 와 $\ln W_{KM4}$, 그리고 $\ln W_{KW2}$ 와 $\ln W_{KW4}$ 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SIZE 1변수(상용근로자 100-299인 사업체규모)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10-99인 사업체규모 범주에 비하여 그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남녀 모두 사업체규모별 순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김대모·김재원·유경준(1996, p.18의 <표 2-7> 참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기업규모간 총임금격차 확대현상은 근로자들의 속인적 특성(연령, 근속연수, 학력 등)에서의 격차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데 <표 2>, <표 3>의 추정결과들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우리 나라 산업별 임금구조에 대해서도 중요한 다음 몇 가지 점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첫째, 제조업 중 경공업부문과 서비스업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 순임금격차기준으로 1986년, 1990년 그리고 1994년에 모두 IND3 H(제조업 중 중화학공업부문), IND5(도·소매·음식·숙박업), IND8(사회·개인서비스업)산업이 제조업 중 경공업부문에 비하여 약 10-20% 더 높은 수준을 견지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를 <표 1>과 비교하여 보면 제조업과의 임금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업부문의 임금수준도 실제로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특히 경공업부문에 비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업종의 일관

5) 원래 노동조합효과는 우리나라에서 필자의 방법처럼 서비스업종까지를 포함시켜 분석하는 경우 크게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성격의 자료를 사용하고 전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G. Yoo(1995)연구에서도 1991년 자료의 경우(G. Yoo(1995)의 p.47 본문서술과 p.68 Table 6-13 참조) 노조효과는 0.3%에 지나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 그 외 국내 연구로 황호영(1996, p.415)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1991년 자료로 통계적 유의성이 약한 음의 노조효과 대기업 -3.1%, 중소기업 -0.1%를 얻고 있다.

된 長期的 高賃金현상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 경제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우리 나라 임금구조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전체적으로 격차 (% 포인트 기준)축소→격차확대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도 발견된다. 순임금격차기준으로 1986년에는 IND3H, IND5, IND8산업이 제조업 중 경공업부문에 비하여 남성근로자의 경우 각각 8.7%, 18.3%, 28.4% 더 높았으며, 여성근로자의 경우 6.7%, 20.5%, 20.0% 정도 더 높았다. 1990년에는 이것들이 각각 9.0%, 12.4%, 11.4%, 6.1%, 13.3%, 12.3%의 격차로 상당한 정도 축소되었다가 1994년에는 11.4%, 12.1%, 23.2%, 16.4%, 17.7%, 20.7%로 다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셋째, 전문기술직(JOB1), 행정관리직(JOB2), 그리고 사무직(JOB3) 등의 그나마지 직종(기본범주)과의 순임금격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포착되는데 이 직종별 순임금격차의 % 포인트 크기는 전반적으로 축소되지만, 남성 JOB2변수의 경우는 기본범주와의 그 격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직종이 통제되지 않은 추정식과 통제된 추정식을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남성근로자의 경우 직종의 통제 여부가 산업별 임금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종이 통제되면 제조업의 경공업부문과의 순임금격차가 상당한 정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30세 미만의 젊은층 근로자의 산업별 임금구조를 살펴보면 1994년의 남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다른 요인들에 차이가 없을 때 기본범주에 비하여 중화학공업부문은 9.5%,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9.0%,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부문은 10.7% 더 높으며, 여성근로자의 경우 각각 차례대로 17.5%, 17.2% 그리고 20.6% 더 높은 임금수준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말하자면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자료로써 최근 10년간의 산업별 순임금구조와 그 변화추세를 개관하여 보았지만, 그 모습은 한마디로 全年齡層과 30세 미만층 모두에서 고른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 그리고 제조업의 경공업부문과 서비스업종 간의 임금격차가 1980년대 후반 축소→1990년대 전반 확대의 패턴을 보여 왔다는 사실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은 非賃金勞動費用面에서의 상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 4>에 의거하여 현금급여에 대비한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의 비율을 산업별로 비교

〈표 2〉 우리 나라 男性労働者の 산업별 임금구조 추이

	$\ln W_{KM1}$	$\ln W_{KM2}$	$\ln W_{KM3}$	$\ln W_{KM4}$	$\ln W_{KM5}$
상 수	6.19** (168)	6.14** (180)	6.71** (186)	6.75** (195)	6.61** (31.8)
R	-0.000305 (-1.36)	-0.000216 (-1.02)			
U	-0.00202 (-0.300)	0.0190** (2.96)	-0.0856** (-15.8)	-0.0689** (-13.2)	-0.0545** (-7.33)
A	0.0663** (33.9)	0.0613** (32.9)	0.0555** (29.2)	0.0541** (29.6)	0.0670** (3.88)
A^2	-0.000735 (-29.5)	-0.000703** (-29.6)	-0.000557** (-23.5)	-0.000566** (-24.8)	-0.000804** (-2.28)
T	0.0635** (42.7)	0.0577** (40.6)	0.0553** (44.0)	0.0549** (45.5)	0.150** (37.5)
T^2	-0.00136* (-19.9)	-0.00120* (-18.5)	-0.00115** (-22.3)	-0.00118** (-23.9)	-0.00908** (-22.0)
SIZE 1	0.0537** (6.66)	0.0704** (9.18)	0.0632** (6.97)	0.0802** (9.19)	0.0149 (1.16)
SIZE 2	0.0932** (8.07)	0.120** (10.9)	0.0498** (5.38)	0.0703** (7.89)	0.00767 (0.593)
SIZE 3	0.176** (20.0)	0.207** (24.6)	0.166** (19.1)	0.188** (22.5)	0.118** (9.81)
ED _h	0.218** (32.3)	0.128** (18.8)	0.196** (30.1)	0.138** (21.2)	0.0579** (3.63)
ED _c	0.659** (79.6)	0.418** (41.9)	0.558** (76.2)	0.381** (43.4)	0.235** (12.5)
JOB 1		0.271** (27.4)		0.178** (26.0)	0.0911** (9.22)
JOB 2		0.479** (40.7)		0.515** (38.2)	1.04** (12.1)
JOB 3		0.156** (22.3)		0.0903** (14.5)	0.0466** (4.90)
IND 3H	0.892** (13.3)	0.0896** (14.1)	0.115** (20.3)	0.114** (21.0)	0.0949** (11.5)
IND 5	0.130** (12.7)	0.124** (12.7)	0.131** (15.1)	0.121** (14.5)	0.0896** (7.32)
IND 8	0.127** (13.9)	0.114** (12.8)	0.244** (30.1)	0.232** (29.1)	0.107** (7.38)
R^2	0.586	0.628	0.589	0.621	0.569
N	17,048	17,048	20,132	20,132	5,903

주: 이들은 모두 OLS 추정결과들이다. ()안의 수치들은 t 값이며, **의 추정계수들은 5%, *의 추정계수들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양측검정)이다. N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낸다.

〈표 3〉 우리 나라 女性勤勞者의 산업별 임금구조 추이

	$\ln W_{KW1}$	$\ln W_{KW2}$	$\ln W_{KW3}$	$\ln W_{KW4}$	$\ln W_{KW5}$
상수	6.52** (242)	6.52** (249)	7.06** (225)	7.07** (230)	6.66** (43.2)
R	0.000407 (1.46)	-0.000156 (-0.572)			
U	0.0396** (5.99)	0.0432** (6.76)	0.00280 (0.427)	0.00845 (1.31)	-0.00787 (-1.14)
A	0.0266** (15.5)	0.0266** (16.0)	0.0253** (13.4)	0.0239** (13.0)	0.0516** (3.64)
A^2	-0.000374** (-15.4)	-0.000363** (-15.4)	-0.000355** (-13.5)	-0.000328** (-12.7)	-0.000803** (2.58)
T	0.0735** (36.3)	0.0676** (35.7)	0.0697** (42.2)	0.0687** (42.4)	0.134** (31.7)
T^2	-0.00125** (-10.5)	-0.00122** (-10.5)	-0.00123** (-15.3)	-0.00123** (-15.7)	-0.00912** (-18.1)
SIZE 1	0.0318** (4.17)	0.0319** (4.31)	0.0477** (4.46)	0.0455** (4.35)	0.0458** (3.48)
SIZE 2	0.103** (9.25)	0.112** (10.3)	0.0661** (6.03)	0.0666** (6.20)	0.0640** (4.84)
SIZE 3	0.159** (18.5)	0.173** (20.6)	0.151** (14.3)	0.156** (15.1)	0.162** (12.8)
ED_h	0.188** (28.0)	0.124** (17.7)	0.169** (21.1)	0.132** (16.4)	0.0989** (8.09)
ED_c	0.707** (49.8)	0.534** (35.0)	0.564** (41.8)	0.441** (30.6)	0.304** (15.6)
JOB 1		0.288** (22.6)		0.210** (20.0)	0.174** (15.9)
JOB 2		0.685** (11.9)		0.568** (5.87)	0.378** (2.32)
JOB 3		0.163** (20.4)		0.0953** (12.8)	0.0835** (11.6)
IND 3H	0.0578** (8.78)	0.0606** (9.51)	0.167** (25.0)	0.164** (25.2)	0.175** (23.4)
IND 5	0.161** (14.9)	0.133** (12.6)	0.185** (18.5)	0.177** (17.9)	0.172** (16.8)
IND 8	0.246** (27.3)	0.123** (12.0)	0.297** (34.8)	0.207** (21.9)	0.206** (19.7)
R^2	0.553	0.583	0.590	0.609	0.569
N	10,690	10,690	9,424	9,424	6,351

주: <표 2>와 동일.

하여 보면 경공업부문은 섬유, 인쇄·출판, 고무·플라스틱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 더 낮다. 사회·개인서비스업이 다소 낮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 전체와 제조업 전체 사이에는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이 요인이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설명해 주기는 어렵다.

〈표 4〉 근로자 1인당 現金給與 이외의 노동비용비율 추이 (단위: 월평균 천 원, %)

	현금급여(A)		기타노동비용(B)		(B/A)(%)	
	1990	1995	1990	1995	1990	1995
제조업	608.5	1,166.0	137.0	337.9	22.51	28.98
음·식료품	604.4	1,026.0	149.8	254.8	24.79	24.83
담배	1,011.7	2,004.9	144.1	203.1	14.24	10.13
섬유	473.3	923.3	109.4	268.6	23.12	29.09
의복	385.6	745.8	82.3	196.0	21.33	26.28
가죽·신발	451.5	752.8	87.7	162.2	19.42	21.55
목재	599.7	1,053.3	121.8	281.6	20.31	26.74
종이	651.3	1,191.9	156.6	270.7	24.04	22.71
인쇄·출판	841.0	1,284.4	216.9	457.0	25.79	35.58
고무·플라스틱	514.4	1,081.8	112.8	356.8	21.93	32.98
가구 및 기타	477.8	975.1	94.2	210.0	19.70	21.54
도·소매업	765.4	1,244.1	176.0	348.7	22.99	28.03
음식·숙박업	630.7	1,064.1	125.1	304.0	19.84	28.57
부동산·사업서비스	657.7	1,173.3	157.8	232.8	23.99	19.84
사회·개인 서비스	468.0	1,063.5	60.1	246.8	12.85	23.21

주: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체의 자료이며 현금급여에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상여 및 기타 수당이 포함되며,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에는 퇴직금 등의 비용, 현물급여의 비용, 법정복리비(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법정 외 복리비(주거, 의료보건, 식사, 문화·체육·오락 등에 관한 비용, 보험금지원금, 경조 등의 비용, 장려금, 학비보조의 비용, 기타), 모집비, 교육훈련비, 기타 노동비용이 포함된다.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各年號

III. 서비스업종 고임금현상의 原因

1. 산업별 임금격차의 이론

앞절에서 우리는 서비스업종, 그 중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의 임금이 제조업, 특히 경공업분야의 임금보다 10-20% 정도 더 높다는 사실과 또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실로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부문의 고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경공업부문의 고용은 거의 대부분 그 절대수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Dickens and Katz(1987)에 따르면 산업별 임금격차는 주로 ① 劳動組合의 역할, ② 市場集中

의 정도, ③ 경제적 수익성(profitability), ④ 기업의 규모, ⑤ 노동력의 質을 나타내는 교육연수 등 여러 가지 속인적 특성, ⑥ 그리고 일시해고율, 재해율, 주당근로시간수, 초과근무시간수,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흔히 대리되는 보상적 격차 요인들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표 2>와 <표 3>의 회귀분석결과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은 노동조합, 기업의 규모, 재해율, 근로시간수, 그리고 관측가능한 여러 가지 속인적 특성을 대부분 통제한 후에 나타난 것이라서 위 설명요인들 중 ①과 ④-⑥ 요인들은 그 설명요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업의 규모는 커질수록 시간당 임금률이 높았으며, 주요 속인적 특성 요인들, 예컨대 교육수준, 연령, 근속연수 등이 높아질수록 임금률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산업별로 이러한 변수들에 차이가 있다면 이 점이 상당한 임금격차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노동조합이나 災害率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정반대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간의 임금격차에 이들 변수가 기여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졸고(1994) 참조).

한편, 흔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에서 임시직이나 일고등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른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의 그러한 특성이 미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더 강하리라는 추측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산업별 임금격차 요인 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에 의한 보상적 격차요인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은 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①과 ④-⑥ 요인들이 충분히 통제되고 난 후에도 유의하게 포착되는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시장집중(독과점) 또는 수익성의 효과인가?(Krueger and Summers(1987), 그리고 Dickens and Katz(1987) 참조) 아니면 우리의 자료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잘 관측되지 않는 勞動力의 質 때문인가?(Murphy and Topel(1987) 참조)

2. 관측되지 않는 勞動力의 質

우선 시장집중효과의 경우 제조업 내부에 한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세분류 산업별로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 고임금을 지급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

〈표 5〉 미국 男性労働者의 산업별 임금구조 추이

	$\ln W_{AM1}$	$\ln W_{AM2}$	$\ln W_{AM3}$	$\ln W_{AM4}$	$\ln W_{AM5}$
상 수	-0.475** (-4.48)	-0.290** (-2.77)	-0.176 (-1.14)	0.147 (0.955)	-0.977 (-0.363)
<i>U</i>	0.129** (6.47)	0.170** (8.55)	0.122** (4.03)	0.173** (5.79)	0.199** (2.55)
<i>BLACK</i>	-0.197** (-5.96)	-0.148** (-4.56)	-0.139** (-3.39)	-0.125** (-3.12)	-0.186** (-2.29)
<i>COLOR</i>	-0.0889 (-1.67)	-0.0674 (-1.30)	-0.0751** (-1.29)	-0.0707 (-1.25)	0.0938 (0.746)
<i>A</i>	0.0687** (13.4)	0.0602** (11.9)	0.0732** (9.64)	0.0675** (9.10)	0.159 (0.735)
<i>A²</i>	-0.000727** (-11.5)	-0.000634** (-10.2)	-0.000736** (-8.00)	-0.000680** (-7.58)	-0.00203 (-0.474)
<i>ED</i>	0.0634** (21.6)	0.0541** (18.1)	0.0641** (15.1)	0.0440** (9.28)	0.0270** (2.42)
<i>JOB 1</i>		0.183** (9.68)		0.233** (6.53)	0.234** (2.80)
<i>JOB 2</i>		0.240** (8.92)		0.322** (8.55)	0.184 (1.85)
<i>JOB 3</i>				0.0848 (1.70)	0.101 (0.949)
<i>IND 3D</i>	0.0332 (1.34)	0.0356 (1.48)	0.0179 (0.459)	0.00827 (0.217)	-0.0432 (-0.488)
<i>IND 5</i>	-0.123** (-4.75)	-0.121** (-4.71)	-0.149** (-3.73)	-0.117** (-3.00)	-0.193** (-2.34)
<i>IND 8</i>	-0.172** (-6.30)	-0.177** (-6.63)	-0.153** (-4.13)	-0.201** (-5.47)	-0.259** (-3.08)
<i>R²</i>	0.275	0.311	0.294	0.333	0.195
<i>N</i>	2,473	2,473	1,471	1,471	407

주: <표 2>와 동일.

어 있지만(정인수(1991), 조우현(1992), 채창균(1993) 등 참조) 주로 소규모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사회·개인서비스업의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 요인이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설명해 줄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존의 통계자료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질이 서비스업종에서 더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는 식의 설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산업별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관측되지 않는 노동력의 질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Murphy and Topel(1987)의 분석에 대하여 Krueger and Summers(1988)는 그러한 결과가 근로자들의 職種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모든 변수들이 충분히 통제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失職하여 산업을 뛰기는 근로자들(따라서 이들 노동력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큰 임금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들어 관측되지 않는 노동력의 질이 산업별 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Murphy and Topel(1987)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를 분석한 남기곤(1994)도 똑같이 직종변화를 統制하지 않고 있다. 사실 <표 2>와 <표 3>에서 직종을 통제한 모형과 직종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1990년의 경우 직종통제 여부가 특히 제조업의 경공업부문과 사회·개인서비스업 사이의 산업간 임금격차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직종을 통제하는 경우 남성근로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 $13.0 \rightarrow 12.4\%$, 사회·개인서비스업 $12.7 \rightarrow 11.4\%$ 로 경공업 대비 격차가 다소 축소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16.1 \rightarrow 13.3\%$, $24.6 \rightarrow 12.3\%$ 로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축소된다.⁶⁾ 이는 적어도 1990년의 경우는 직종구성의 차이가 산업 간 임금격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해석되며, 따라서 직종을 통제한다면 위 연구결과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들에 대한 풍부하고 믿을 만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Krueger and Summers(1988)의 방식에 의한 분석이 사실상 어렵다면 관측하기 어려운 노동력의 질이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을 초래하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의 현실적합성을 간접적으로 논증해 보기 위해 시장경제가 훨씬 더 잘 발달되어있는 외국, 예컨대 미국의 산업별 임금구조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서 어떤 중요한 시사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1978년⁷⁾과 1988년의 美國의 常住人口調查(current population survey: CPS)⁸⁾ 자료에 의거 미국의 산업별 임금구조를 <표 2>와 <표 3>의 모형과 거

6) 남기곤(1994)은 노동부의 1990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1992년 '기업 내 숙련형성에 관한 사업장 조사 및 근로자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7) 1978년을 선택한 것에 특별한 이유를 불일 수도 있다. 획득자료의 제약 탓도 있지만 1978년 미국의 1인당 GNP가 9,721달러로서 1994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 8,500달러와 유사하다는 고려가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수요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수준이 유사했던 시기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8) 미국의 CPS는 약 6만 가계(1980년대 당시)에 대한 매월의 조사자료로서 노동력의 종사상 지위, 통상적인 주당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적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연구와 정책목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나라 전체의 노동력 규모와 실업률에 대한 추정치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CPS는 순환적인 표본설계에 의거하여 조사되는데, 예컨대 가계들은 일단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된 다음 그 다음 8개

의 같은 모형으로 회귀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5>와 <표 6>이다. 표에서 $\ln W_{AM1}$, $\ln W_{AM2}$ 는 각각 1978년의 근로소득함수 추정결과인데, $\ln W_{AM1}$ 식은 직종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이고 $\ln W_{AM2}$ 식은 직종더미를 도입하여 직종을 통제한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ln W_{AM3}$, $\ln W_{AM4}$ 는 1988년 근로소득함수 추정결과이며, 역

<표 6> 미국 女性勤勞者의 산업별 임금구조 추이

	$\ln W_{AW1}$	$\ln W_{AW2}$	$\ln W_{AW3}$	$\ln W_{AW4}$	$\ln W_{AW5}$
상 수	0.271** (2.47)	0.511** (4.78)	0.116 (0.759)	0.535** (3.67)	-4.37* (-1.97)
U	0.240** (9.51)	0.257** (10.6)	0.208** (6.46)	0.195** (6.44)	0.208** (2.97)
$BLACK$	-0.0473 (-1.67)	-0.000965 (-0.035)	-0.0885** (-2.45)	-0.0458 (-1.36)	-0.0532 (-0.834)
$COLOR$	0.0503 (0.946)	0.0565 (1.11)	-0.0373 (-0.655)	0.0254 (0.477)	0.0232 (0.225)
A	0.0153** (2.98)	0.0128** (2.61)	0.0415** (5.79)	0.0341** (5.10)	0.400* (2.24)
A^2	-0.000155** (-2.44)	-0.000132* (-2.16)	-0.000453** (-5.17)	-0.000362** (-4.43)	-0.00716* (-2.01)
ED	0.0576** (16.1)	0.0359** (9.40)	0.0729** (16.1)	0.0393** (8.14)	0.0432** (4.27)
$JOB 1$		0.324** (12.1)		0.453** (13.1)	0.377** (5.68)
$JOB 2$		0.295** (7.38)		0.482** (12.2)	0.434** (5.78)
$JOB 3$		0.177** (9.08)		0.249** (9.14)	0.250** (4.76)
$IND 3D$	0.118** (3.89)	0.0991** (3.38)	0.106* (2.02)	0.124** (2.54)	0.105 (1.10)
$IND 5$	-0.130** (-4.91)	-0.142** (-5.53)	-0.244** (-5.41)	-0.175** (-4.15)	-0.147 (-1.85)
$IND 8$	-0.0344 (-1.35)	-0.0864** (-3.49)	-0.0297 (-0.716)	-0.0927** (-2.38)	-0.0800 (-1.04)
R^2	0.184	0.253	0.263	0.364	0.346
N	1,995	1,995	1,511	1,511	421

주: <표 2>와 동일.

월 동안에는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다음 4개월 동안 다시 조사대상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추적조사자료(longitudinal data) 형태로 시계열로 연결될 수도 있다. CPS는 분명히 미국에서 근로자들의 보수연구에 적합성이 높은 가장 풍부한 자료원천이다. 그렇지만 가계조사이기 때문에 고용주 특성이나 부가급여 등에 관한 정보는 다소 제약적이며, 따라서 사업체 기준의 조사인 우리나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도 차이를 보인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J.R. Antos(1983)참조. 우리의 추정에 사용된 CPS자료는 1978년의 경우 전체표본의 20% 확률표본, 1988년의 경우 2.5% 확률표본이다.

시 $\ln W_{AM3}$ 는 직종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 $\ln W_{AM4}$ 는 직종더미를 도입한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하첨자가 AM대신 AW로 되어 있는 모형은 여성의 근로소득함수이며, $\ln W_{AM5}$ 나 $\ln W_{Aw5}$ 는 1988년 CPS자료에서 30세 미만의 젊은층 근로자들의 근로소득함수 추정결과이다.

변수 중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종을 통제하기 위해 흑인더미 *BLACK*과 유색인종더미 *COLOR*를 추가로 도입하고, 자료가 없어 근속연수변수(*T*)와 사업체규모변수(*SIZE*)를 도입하지 못한 점, 학력변수 *ED*를 더미변수가 아닌 교육연수변수로 사용한 점, 그리고 제조업이 耐久財부문과 非耐久財부문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비내구재부문을 기본범주로 삼고, 내구재부문 더미변수 *IND3D*를 도입한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본범주가 제조업의 경공업부문이라 미국의 비내구재부문과는 괴리가 있지만 추정결과를 보면 1988년에는 내구재부문의 임금이 비내구재부문에 비하여 남성의 경우 0.8-1.8% 더 높고(통계적 유의성은 약하다) 여성의 경우 10.6-12.4%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경공업부문과 미국의 비내구재부문을 서로 유사한 범주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문제의식에서 바라볼 때 미국의 산업별 임금구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1988년의 경우를 볼 때 직종의 통제 여부가 산업간 임금격차에 유의하고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그 변화효과가 크다. 이는 Murphy and Topel(1987)에 대한 Krueger and Summers(1988)의 비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 준다. 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으로 <표 7>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남녀 모두 비내구재 제조업에 비하여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9.3-20.1% 정도 더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임금구조와 정반대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Fuchs(1968, p.132), Katz and Summers(1989)의 추정결과와도 整合性을 가지는데, 이러한 정합성의 의미는 이 현상이 미국 노동시장에서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혹시 사업체규모변수가 생략된 탓인지 알 수 없어 우리나라의 1994년 $\ln W_{KM4}$ 와 $\ln W_{Kw4}$ 식에 대하여 사업체규모변수가 도입되지 않은 모형을 추정하여 비교하여 보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체규모변수 도입 여부가 산업간 임금격차에 1-2% 포인트 정도의 차이밖에 만들어 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표 7〉 우리 나라(1994년)와 미국(1988년)의 시간당 임금함수
In W 의 회귀분석에 의한 산업별 임금구조 비교

	우리 나라(1994년)		미국(1988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i>IND3H</i>	0.129** (23.3)	0.167** (25.0)	0.00827 (0.217)	0.124** (2.54)
<i>IND5</i>	0.107** (12.6)	0.165** (16.5)	-0.117** (-3.00)	-0.175** (-4.15)
<i>IND8</i>	0.227** (28.0)	0.212** (22.1)	-0.201** (-5.47)	-0.0927** (-2.38)
R^2	0.605	0.593	0.333	0.364

주: 이 추정결과는 미국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ln W_{KMA}$ 와 $\ln W_{KW4}$ 식에서 사업체규모변수 $SIZE 1, SIZE 2, SIZE 3$ 를 제외시킨 모형의 추정결과인데 여기서 *IND3H*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중화학공업부문, 미국의 경우는 *IND3D*로 제조업의 내구재산업부문이며, 기본범주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경공업부문, 미국은 제조업의 비내구재산업부문임.

자료: 우리나라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테이프자료, 미국은 CPS 테이프자료.

또한 우리나라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모두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가 조사대상이지만, 미국의 CPS자료는 가계조사자료이므로 사업체규모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사실 서비스업종은 대부분 소규모업체로 운영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偏倚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CPS자료와 유사한 국내자료로서 대우경제연구소의 1995년 '대우패널데이터'(조사기준연도는 1994년)를 사용하여 1994년 한 해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소득함수를 추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

〈표 8〉 대우패널데이터에 기초한 산업별 임금구조

	전 규모 사업체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i>IND3H</i>	0.111** (2.34)	0.0403 (0.385)	0.128** (2.72)	0.116 (1.05)
<i>IND5</i>	-0.00170 (-0.029)	0.0502 (0.469)	0.0129 (0.216)	0.171 (1.40)
<i>IND8</i>	0.111* (1.80)	0.122 (1.05)	0.129* (2.03)	0.222* (1.67)
R^2	0.296	0.480	0.321	0.441

주: 〈표 7〉과 동일한 모형으로 추정함.

았다. 표에 따르면 패널데이터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에 비하여 우리 나라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은 그 정도가 다소 약화된다고는 하나 여전히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남자에 한하여 IND5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극히 낮다.⁹⁾

결론적으로 제조업과 전통적인 서비스업종들 간의 순임금격차구조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결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만약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이 관측하기 어려운 노동력의 질적 차이 때문이라면 市場原理가 훨씬 더 잘 작동한다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왜 그러한 서비스노동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종의 고임금현상은 대부분 노동력의 질을 반영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높은 노동력의 質에 대한 적절한 시장평가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경제적 렌트 또는 일종의 임금프리미엄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급속한 노동력의 이동·배분이 촉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노동이동에 대한 몇 가지 국내의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성제환(1993)은 서비스업종사 근로자들 중에서 물론 신규입직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제조업에서 이동해 온 근로자의 수도 매우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의 취업증가가 많은 경우 젊은층의 신규입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異論을 제기하지 않지만, 어수봉(1992)과 조우현·강창희(1996) 그리고 정인수(1996) 등은 분석결과 기존의 제조업 생산직근로자들이 서비스직종으로 이동하는 경로의 중요성은 강조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실제 사용된 자료를 살펴보면 제조업 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또는 무직)의 경로와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또는 무직)→도·소매·음식·숙박업(또는 서비스업) 근로자 경로의 비중이 일관되게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결국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이 관측되지 않는 노동력의 질 개념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9)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 부호는 양으로 변화하였지만 '직종별임금실태조사'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와 전혀 다르게,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임금에 관한 한 패널데이터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보인다.

업종의 고수익성 개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3.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수익성

노동력의 질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산업의 收益性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이 산업소속 근로자들은 임금프리미엄을 얻게 되고, 따라서 임금도 높을 수 있다. 미국의 사레이기는 하지만 Krueger and Summers(1987)와 Dickens and Katz(1987)는 어떤 산업의 보다 높은 수익성이 고임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서비스업이 제조업, 특히 경공업부문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익성 또는 임금지불능력을 항유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경쟁 속에서 한 산업이 보다 높은 수익성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생산물수요의 증가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 독과점이윤의 존재, 또는 실현이익의 粉飾과 隱蔽, 그리고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에 기인한 고지불능력 등에 기인 할 것이다. 이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서비스업종의 생산물가격이 공산품의 가격에 비하여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은 흔히 지적되어 온 바 있다(Kravis, Heston and Summers(1983), 李上雨·林炯石(1994), 졸고(1996)). 그렇지만 어떤 산업의 수익성은 생산물의 가격변화만으로는 알 수 없다. 중간투입물 및 요소투입의 가격변화까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졸고(1996)에 따를 때 일시적인 불균형상태가 아니라, 서비스생산부문과 재화생산부문의 일반균형을 전제로 하는 경우 同一勞動, 同一賃金이 성립하더라도 노동비용을 포함한 생산비가 모두 충분히 반영된다면 서비스생산물의 상대 가격 상승현상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생산물의 상대가격 상승이 바로 서비스부문의 고임금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은 되지 못한다. 여기에 지불능력 개념이 도입될 수 있다.

물가(CPI)상승률과 GDP(불변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의 합을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의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명목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때 해당 산업의 지불능력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표 9>에서 1992-96년 제조업의 지불능력이 연 0.28%로 감소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연 3.73% 감소, 사회 및 개인서비스 연 2.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하여 임금지불능력면에서 더 불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명목임금과 지불능력 상승률의 추이 비교
(연(기하)평균 상승률, %)

	제 조 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명목 임금	가격 (WPI)	GDP 생산성	명목 임금	가격 (CPI)	GDP 생산성	명목 임금	가격 (CPI)	GDP 생산성
1985~89	17.93	0.26	6.48	11.81	8.42	9.74	11.27	6.34	5.28
1989~92	19.08	2.72	9.63	16.93	14.67	5.66	14.85	12.05	-5.42
1992~96	12.28	2.70	9.30	10.97	5.97	1.27	12.13	8.22	1.07
1986~96	16.15	1.81	8.18	12.87	9.18	5.44	12.55	8.56	-0.08

주: 명목임금 및 GDP생산성 증가율은 근로시간 변화를 감안한 시간당 명목임금 및 불변GDP 생산성 증가율임. 제조업 생산물의 가격상승률은 도매물가지수에 의한 상승률이며, 도·소매·음식·숙박의 경우는 특수분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익지수 상승률,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 가격상승률은 개인서비스지수 상승률임.

한편 서비스업종에서는 산업의 특성상 생산물의 품질에 대한 표준화나 객관적인 비교가 곤란하므로 각 생산물 공급자는 제한적이나마 일정한 독과점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업종의 특성상 과잉설비와 과잉노동력이 항상 쉽게 은폐·존속가능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過剩生產→價格下落의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또 서비스업부문은 그 동안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쟁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정부의 인허가과정을 통한 진입규제도 강력하여 생산물가격에 대한 시장경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이윤확보 및 유지가 손쉬웠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형태로 운영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사회·개인서비스업이 일반적으로 독과점이윤을 누린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도기적 초파이윤이나 독과점이윤의 존재로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여기서 언급한 서비스업종의 보편적 특성들이 미국과 같이 좀더 발달된 시장경제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성립한다고 볼 때 이 특성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만들어 내는지 전혀 설명해 줄 수 없다.

4. 서비스업종의 낮은 租稅負擔

이제 마지막으로 실현이익의 분식과 은폐, 그리고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에 기인한 서비스업종의 고수익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Feige(1988, p.34)는 美國 국세청의 보고서에서 1981년까지 연방소득세의 세원으로써 비신고된 총소득이 신고된 총조정소득의 16%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O'Higgins(1988, p.180)는 英國의 자료로써 1977년에 세원으로 포착된 소득에 대한 누락된 소득의 백분율을 자영업소득의 경우 23.5%, 임금 및 봉급 0.2%, 기업이윤 0.7% 정도로 추정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영업의 누락 소득이 전체 누락소득의 78.2%를 점한다고 쓰고 있다. 만약 우리가 자영업부문에서 누락소득의 비중이 높고 또한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사회·개인서비스업에 자영업의 비중이 크게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 부문의 세원누락이 매우 클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개인수표 사용이나 영수증 수수가 일반화되고, 세원포착방법이나 신용제도가 더욱 발달되어 있는 영국, 미국 등에서 누락소득의 비중이 이러하다면 거래 및 징세환경이 더욱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높은 세원누락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금으로 거래될수록, 중간투입물로서가 아니라 최종소비재로 거래될수록 당해 사업의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누락·은폐가 훨씬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표·어음 또는 신용카드로 거래되면 거래기록이 포착될 가능성이 크며 중간투입물 거래의 경우는 매입자가 손비처리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므로, 판매자의 매출액 또는 소득금액 은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¹⁰⁾ 그렇다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누락→세원누락→탈세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신고받아 여기에 별도로 조사·추정된 標準所得率¹¹⁾을 곱하여 사업소득을 추정하고, 여기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만

10) 또한 국세청 세무담당자들의 지적에 의하면(면담조사) 서비스업에서는 개인사업주의 회박한 납세의식도 문제이지만, 근로자 紹料가 은폐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자 자신들이 근로소득세 납세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많고 시설투자가 많아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중간투입물 거래의 손비처리를 위해 서나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재보험, 단체행동, 투서 등등으로 회계처리가 체계화되고 사업 내용도 훨씬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11) 국세청에서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의 세원포착방법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세원추정방법이다. 이 때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 표준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김석령(1996, p. 383))이다. 소규모 비법인사업체에서 흔히 그렇듯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에 의하여야 할 경우 추계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약 처음부터 매출액에 누락이 발생했다면 이 표준소득률을 아무리 정확하게 추정한다 하더라도 탈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 때 이론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문제는 이처럼 기업에서 탈세가 존재할 때 고용주로서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프리미엄을 지급할 유인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단서들은 흔히 렌트배분으로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하려 한 Lindbeck and Snower(1986)의 내부자-외부자이론 (insider-outsider theory)이나 산업별 임금격차를 렌트배분론으로 설명하는 Krueger and Summers(1987)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Krueger and Summers(1988)는 이러한 렌트배분론적인 설명을 效率性 賃金理論 (efficiency wage theory)의 한 형태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설명이 두 가지 의미에서 효율성임금이론들과 내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기업들이 렌트를 배분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노동력이 사직하거나, 태만(shirking)을 부리거나, 아니면 생산을 방해함으로써 기업과 협력하지 않는 노동력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 노동노력을 유인해 냄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표준적인 경쟁상황에 비하여 효율성임금 환경에서는 렌트배분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관점도 Krueger and Summers(1988)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비스업종 기업들은 탈세로 얻은 보다 많은 이윤의 일부를 임금프리미엄의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직하거나, 태만을 부리거나, 아니면 생산을 방해함으로써 기업과 협력하지 않는 노동력으로 변하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탈세를 눈감아 주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서비스업종에서 탈세의 가능성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형으로 일단 이론적으로 이 부문의 고임금현상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생산함수 (2), (3)와 이윤함수 (4), (5)를 생각하는데, 하첨자 m 과 s 는 각각 제조업의 경공업부문,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을 나타낸다. Q 는 생산량, K 는 자본투입량, L 은 노동투입량을 나타낸다. r 은 세후 이윤율¹²⁾, w 는 세후임금률, t 는 표준소득률방식으로 매출액에 적용되는 세율, 그

12) 여기서 이윤율(rate of profit)은 흔히 말하는 투자자본의 수익률(rate of return on capital) 또는 순임료율(net rental rate)인데, 이 값의 분자를 이루는 수익(return)(=순임료(net rental)=이윤(profit))은 이자(interest)와 순수이윤(pure profit)의 합이다(M.C. Howard(1979), pp.83-85).

리고 α 는 脫稅率이다. 논의의 편의상 근로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Q_m = f_m(K_m, L_m) \quad (2)$$

$$Q_s = f_s(K_s, L_s) \quad (3)$$

$$\pi_m = (1 - t)p_m f_m(K_m, L_m) - r_m K_m - w_m L_m \quad (4)$$

$$\pi_s = \{1 - (1 - \alpha)t\}p_s f_s(K_s, L_s) - r_s K_s - w_s L_s \quad (5)$$

이제 식(4), (5)에서 이윤극대화 1계조건을 구하여 정리하고 $p_m = p_s = 1$ 로 정규화(normalize)시키면 각각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에 대하여 식(6)-(9)을 얻을 수 있다. 식에서 $f_{m,L}(K_m, L_m)$, $f_{s,L}(K_s, L_s)$, $f_{m,K}(K_m, L_m)$, $f_{s,K}(K_s, L_s)$ 는 각각 산업별 노동투입 및 자본투입의 한계실물생산이다.

$$(1 - t)f_{m,L}(K_m, L_m) = w_m \quad (6)$$

$$\{1 - (1 - \alpha)t\}f_{s,L}(K_s, L_s) = w_s \quad (7)$$

$$(1 - t)f_{m,K}(K_m, L_m) = r_m \quad (8)$$

$$\{1 - (1 - \alpha)t\}f_{s,K}(K_s, L_s) = r_s \quad (9)$$

여기서 우리는 기업들의 경쟁 때문에 결국 두 부문의 稅後利潤率이 서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탈세가 없고 투하자본이 동일하다면 자본을 제공하는 이들의 경쟁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세전이윤율이 서로 동일하고 세후이윤율도 서로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서비스업 이윤에서 탈세가 존재한다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세전이윤율이 서로 동일한 상황이라면 서비스업종의 세후이윤율이 탈세 때문에 반드시 더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세후이윤율 때문에 서비스업종에 더 투자를 하든지, 제조업에 투하된 자본을 뽑아 서비스업쪽으로 돌릴 것이다. 결국 경쟁 때문에 두 산업 간에 세후이윤율은 서로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식(8), (9)에서 식(10)가 성립한다.

$$(1 - t)f_{m,K}(K_m, L_m) = \{1 - (1 - \alpha)t\}f_{s,K}(K_s, L_s) \quad (10)$$

그렇다면

$$f_{m,K} = \left(1 + \frac{\alpha t}{1-t}\right) f_{s,K}, \quad 0 < t < 1, \quad 0 < \alpha < 1 \quad (11)$$

이 되고, 따라서 $f_{m,K} > f_{s,K}$ 이 성립할 것이다. 즉, 소비자서비스업에서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탈세가 α 의 율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균형에서는 제조업 내 경공업부문의 稅前利潤率($f_{m,K}$ 와 같다)이 소비자서비스부문의 세전이윤율($f_{s,K}$ 와 같다)을 상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탈세 때문에 서비스업종에 자본의 (納稅前)한계생산성이 제조업의 그것보다 더 낮아지도록 과다한 자본이 투하된다는 것이다. 탈세는 서비스업종에 특혜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셈이다.

노동투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만약 노동투입이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식(6), (7)에서 근로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 $w_m = w_s$ 가 성립하고, 이는 결국 $f_{m,L} > f_{s,L}$ 을 의미할 것이다. 즉, 동일 보수를 받는 노동력을 산업간에 비교할 때 소비자서비스업종의 노동력이 탈세 때문에 보다 낮은 한계 생산물가치를 실현시키는 수준까지 과다고용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서비스업종의 근로자가 생산성이 보다 높은 제조업의 근로자와 동일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탈세율 α 의 값이 커질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이 모두 동질적이지 않다. 이를 이 단순한 모형과 관련시켜 어떻게 음미해 볼 수 있는가? 우선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고 인적 자본투자량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학력차이를 생각해 보자. 만약 이 학력수준이 $f_{m,L}$ 이나 $f_{s,L}$ 을 결정한다고 보고, 두 산업에서 동일 학력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f_{m,L} = f_{s,L}$ 이 성립한다면 식(6), (7)식은 이 경우 바로 $w_m < w_s$ 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즉, 탈세가 존재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동일한 학력의 근로자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할 유인은 항상 존재하며, 이 유인 역시 탈세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종의 탈세율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업종의 상대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시장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효율성 임금을 받거나 탈세에 의한 추가이윤의 배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은 不均衡狀態에 있게 되며, 따라서 서비스업 종은 낮은 조세부담률에 의한 상대적 高收益→높은 임금프리미엄으로 노동

〈표 10〉 총자본에 대한 산업별 세전이윤율 (『기업경영분석』 기준) (단위: %)

산 업	1992	1993	1994	1995	1992-1995
도·소매업	5.84	6.18	6.76	6.75	6.38
숙박업	3.71	5.69	5.50	6.29	5.30
제조업(중소기업)	6.47	7.07	7.81	6.94	7.07
경공업	n.a.	n.a.	7.77	7.60	7.69
음식료품	7.02	8.32	8.94	6.60	7.72
섬유	6.29	7.58	7.20	3.78	6.21
의복	3.52	6.98	9.13	4.82	6.11
가죽 및 신발	5.99	1.54	7.23	8.07	5.71
목재	7.02	7.24	5.85	8.53	7.16
종이	6.42	7.20	7.48	8.07	7.29
인쇄	13.17	2.16	6.79	4.34	6.62
가구 및 기타	4.65	8.21	8.91	7.62	7.35

주: 여기서 이윤율은 총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인데(제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부문), 이 때 이윤은 경상이익, 순금융비용, 임차료의 합계이며, 총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과 부채의 합계를 의미한다. 즉, 『기업경영분석』의 부가가치개념에서 감가상각비, 인건비, 조세공과 등이 차감된 개념이 이윤이다.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各年號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신규노동력,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화하였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노동력, 아니면 다른 부문, 예컨대 제조업의 경공업부문에 이미 취업해 있는 노동력을 서비스업종쪽으로 강력하게 유인해 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모형에서 도출된 이론적 결론들이 임금의 경우 이미 위 회귀분석결과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자본투입의 경우는 실증자료로 확인해 보려면 산업별로 생산액, 각종 생산비, 납세액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별 조세부담률 또는 납세자료는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식 (11)에서 우리는 서비스업종에서 보다 높은 탈세율이 성립한다면 두 부문 사이의 균형을 전제하는 경우 제조업 경공업부문의 稅前利潤率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의 세전이윤율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는데, 이를 이용가능한 현실의 통계자료로 확인해 보는 것도 유력한 방법이다. 만약 적용세율이 산업 간에 동일하고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투하된 자본에 대한 세후이윤율은 산업 간에도 경쟁에 의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탈세가 보다 용이한 산업의 세전이윤율은 자연히 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1993년 산업총조사보고서』,『1994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리고『1994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거하여 비교대상 산업별 세전이윤율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10>과 <표 11>이다. <표 10>에서 세전이윤율의 분자는 세전이윤인데, 그 내역은『기업경영분석』의 경상이익, 순금융비용, 임차료의 합계이며 분모가 되는 총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과 부채의 합계이다. 이 세전이윤 개념은 자기자본이든 타인자본이든 또 실물자산으로 임차한 것이든 영업에 사용된 모든 자본에서 발생한 이윤을 전부 포괄하는 稅前財產所得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전이윤은『기업경영분석』의 부가가치개념에서 감가상각비, 인건비, 조세공과 등을 차감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附加價值로『국민계정』요소비용국민소득기준의 개념을 채택하는데, 이는 요소소득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순간접세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감가상각비는 원래 부가가치로 간주할 수 없고 조세공과는 모두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세이므로 당연히 차감되어야 한다.

<표 11>은 통계청의『1993년 산업총조사보고서』,『1994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리고『1994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산업별 세전이윤율 계산결과이다. 그런데 이를 통계자료들은 주지하는 대로 그 부가가치 개념이『국민계정』요소비용국민소득 개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調整計算이 필요하며,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총자본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1993 산업총조사보고서』에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의 부가가치는『1993 산업총조사보고서』의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에서 직접생산비¹³⁾를 차감한 수치에 다시 간접생산비에 포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세금공과금,¹⁴⁾ 기타¹⁵⁾의 항목을 추가로 차감하여 추정한다. 그런데 이 간접생산비 항목들이 규모별로는 구분·추계되고 있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는 유형고정자산의 규모별분포에 비례시켜 규모별로 배분하고, 세금공과금과 기타 비용항목은 직접생산비의 규모별분포에 비례시켜 규모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종사자 1~4인의 零細事業體의 경우의 부가가치는 출하액-생산비¹⁶⁾의 방식으로 추정한다.

13)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또는 수리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14)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조합비, 협회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15) 광고선전비, 운반 및 보관비, 통신비, 접대비, 여비, 보험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16) 재료비, 연료비, 기타(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가 이에 속한다.

역시 『1994 도소매업 통계조사보고서』와 『1994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로부터 일관된 개념의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액-구입액-기타 경비¹⁷⁾를 계산하고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액-구입액-기타 경비¹⁸⁾를 계산한다.¹⁹⁾

〈표 11〉 총자본에 대한 산업별 세전이윤율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와 『산업총조사보고서』 기준)

(%)

	종 사 자 수 규 모 별					
	1인	2-4	5-9	10-49 ^{a)}	50-99	100-199
도·소매업(1993)	5.37		18.91	23.53		20.62 ^{a)}
음식·숙박업(1994)	12.82 ^{b)}	7.43 ^{c)}	8.94	9.38		8.11 ^{a)}
경공업(1993)	29.07		20.84	20.80-22.89	21.45	28.60
음식료품	23.61		7.91	15.80-17.17	19.45	33.15
섬유	29.82		23.52	19.94-20.45	19.97	20.83
의복	38.54		32.39	25.27-32.05	27.85	32.40
가죽 및 신발	43.49		36.17	30.99-33.65	25.50	23.13
목재	23.97		20.91	18.91-21.92	22.87	31.83
종이	25.52		16.14	14.68-16.03	15.81	20.18
인쇄	33.43		19.87	20.42-27.11	16.09	24.87
가구 및 기타	28.94		21.28	20.59-22.90	23.93	26.77

주: a) 종사자 50인 이상 규모 사업체 전체가 포함된다.

b) 종사자 1인의 규모분류이다.

c) 종사자 2-4인의 규모분류이다.

d) 경공업부문의 경우는 『1993년 산업총조사보고서』의 종사자 규모분류가 10-19인과 20-49인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함께 나타내기 위해 수치를 범위로 표시하였다.

자료 : 통계청, 『1993년 산업총조사보고서』, 1996.

_____, 『1994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1996.

_____, 『1994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1996.

17)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복리후생비, 보험료, 협회비, 차량비, 연료비, 교통비, 통신비, 여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관료, 운송료 등이 이에 속한다.

18)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복리후생비, 보험료, 협회비, 차량비, 연료비, 교통비, 통신비, 여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관료, 운송료 등이 이에 속한다.

19) <표 10>에는 도·소매업, <표 11>에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세전이윤율이 추정되어 있는데, 이는 필자의 지식범위 내에서 우리 나라의 신뢰성 있는 가용통계를 대체로 모두 동원한 결과이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에 수록되지도 않아 추정해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다음으로 總資本의 추정치를 얻어야 하는데 『산업총조사보고서』는 實物資本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토지는 제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종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산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경영분석』에서 얻은 1992~1995년간의 평균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산업총조사보고서』의 산업별 출하액²⁰⁾에 곱하여 산업별 총자본을 구하는 방식으로 총자본을 추정한다. 그런데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업종이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조업의 평균 총자본회전율도 『기업경영분석』의 중소기업 해당 수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구한 산업별 총자본을 산업별 세전이윤율의 분모로 취한다.

한편 『산업총조사보고서』에서의 세전이윤 또는 세전재산소득은 앞에서 구한 부가가치에서 총인건비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산업총조사보고서』의 급여액은 유급종사자들에게 지급된 실제급여액만 나타낼 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임금부분에 해당하는 彙屬給與額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귀속임금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별·규모별·성별 연간 평균 유급종사자수와 급여액,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KLI 노동통계』의 산업별 남녀임금격차 자료로 산업별·규모별·성별 종사자 1인당 평균급여액을 구한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서 구한 <표 12>의 산업별·성별·종사자위별 평균근로시간 차이를 반영하여 산업별·규모별·성별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귀속임금수준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귀속임금수준을 산업별·규모별·성별 종사자수에 곱하여 귀속임금총액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귀속임금총액과 실제급여액을 합하면 총인건비가 되는데, 이를 앞의 부가가치에서 차감하면 산업별·규모별 세전이윤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분자로 하고 앞에서 구한 총자본을 분모로 하여 마지막으로 세전이윤율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표 11>이다.

<표 10>과 <표 11>을 보면 자료가 달라 세전이윤율 수준에 서로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조업 경공업부문의 稅前利潤率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세전이윤율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20) 출하액은 생산액-재고증감액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표 12〉 산업별 종사상자위별 평균근로시간 (1992년)

(단위: 주당 근로시간)

	남 자			여 자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	기타		도소매·음식·숙박	기타		
자영업주	51.2	52.7	53.1	51.6	44.5	50.7	51.8	46.8
무급가족종사자	48.6	45.8	45.9	44.9	43.8	46.8	47.3	42.9
임금근로자	50.3	48.6	50.6	47.9	47.8	45.9	48.7	44.5

주: 여기서 평균근로시간은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의 「종사상의 지위, 취업시간 및 산업별 취업자」 표에서 취업시간 계급의 계급중앙값을 기준으로 취업자수 가중평균된 값임. 기타 서비스업은 당시 분류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전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제외된 개념이며 임금근로자에는 상시고와 일고가 모두 포함됨.

자료: 통계청,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3, p. 216.

·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믿을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이 계산결과들을 우리 나라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업종의 탈세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추정의 간접적 증거로 해석하고, 이를 서비스업종 고임금현상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한 탈세가능성 외에도 마치 금융자산의 경우 그 위험도에 따라 이자율 또는 수익률수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산업별로 이윤율격차를 발생시키는 산업의 특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당해 산업에 고유한 危險의 정도일 것이다.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위험이 높은 산업일수록 위험기피적인 투자자 또는 사업주의 유인에 필요한 평균이윤율은 높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세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제조업의 경공업부문이 그 위험도면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前者의 세전이윤율은 반드시 後者의 세전이윤율과 같거나 그 이하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표 10>과 <표 11>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제조업 경공업부문의 세전이윤율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세전이윤율을 상당한 차이로 상회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낮은 세전이윤율은 이 산업의 상대적 위험도 수준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나라 제조업노동과 서비스업노동 사이의 純賃金隔差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하여 왔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분석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속인적 특성 및 일자리특성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임금수준이 제조업 전체, 그리고 특히 제조업의 경공업부문에 비하여 순임금격차기준으로 10~20%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 현상을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일종의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영향력, 독과점이윤을 반영하는 현상도 아니며 관측되지 않는 노동력의 질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서비스업종의 고유한 특성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의 원인은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수익성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 고수익성은 서비스생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기인한 과도기적 초과이윤이나 독과점이윤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실현이익의 분식과 은폐, 그리고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에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도록 하거나 근로자의 태만방지를 위한 효율성 임금의 지급에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조업 경공업부문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세전이윤율을 계산·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 경공업부문의 稅前利潤率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세전이윤율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우리 나라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업종의 높은 탈세가능성과 그로 인한 고지불능력의 간접적 증거로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들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선 이미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오늘날 우리 나라의 고임금·인력난 또는 人力難·遊休人力問題을 제조업 자체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서비스업종까지를 포함한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이 서비스업종의 고수익성에 기인하고 고수익성이 다시 낮은 조세부담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 고임금현상은 결국 우리 나라의 신용거래제도 및 조세제도의 미비와 불완전성이 생산성의 수준 및 증가율면에서나 다른 부문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등 외부효과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성 서비스업종에게 실질적으로는 낮은 조세부담률의 형태로 특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온 결과 성립한 현상이라는 의미도 도출된다.

사실 임금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 기술인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 새로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신규노동력이나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었던 기존 노동력들이 서비스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들에게로 이동하여 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현재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이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는 증거이다.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임금구조를 노동시장을 통하여 노동력배분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유인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현실은 또한 우리 나라의 노동력배분 유인체계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그것과도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상의 분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정책함의는 조세구조가 최소한 생산성의 수준 및 증가율면에서나 다른 부문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등 외부효과면에서 비진보적인 도·소매·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성 서비스업종에게 실질적으로는 특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稅率을 전반적으로 다소 하향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비스업부문 및 자영업주부문에서의 세원누락과 탈세를 막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1. 국세청, 『94년 귀속 표준소득률』, 1995. 3.
2.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各年號와 테이프자료.
3. _____,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各年號.
4. 통계청, 『1994 도소매업 통계조사보고서』, 1995. 9.
5. _____, 『1993년 산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기타편)』, 1995.

6. _____, 『1994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1996. 10.
7. 韓國銀行, 『기업경영분석』, 各年號.
8. 美國, 1978년 및 1988년의 CPS자료.
9. 金大模·金在源·俞京濬, 『企業規模間 賃金隔差의 原因과 課題 —母企業과 協力業體의 實態를 中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996.
10. 김석령, 『所得稅法』, 세무공무원교육원, 1996.
11. 남기곤, “독점-비독점부문 간 노동시장구조의 차이에 관한 세 논문”, 서울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1984.
12. 南盛日, “高賃金·人力難, 무엇이 問題인가?”, 『勞動經濟論集』 제19권 제1호, 1996. 7.
13. 朴英凡, 『韓國의 產業災害 現況과 推移』, 한국노동연구원, 1991.
14. 裴震漢, “製造業 生產職勞動에 대한 誘因體系”, 『勞動經濟論集』 제17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4. 12.
15. _____, “서비스產業화와 經濟成長”, 『經濟發展研究』 제2호, 한국경제발전학회, 1996. 12.
16. 成濟煥, 『우리 나라 勞動市場의 勞動供給形態와 扱傭調整의 特性』, 한국경제 연구원, 1993.
17. 魚秀鳳, 『韓國의 勞動移動』, 한국노동연구원, 1992.
18. 李上雨·林炯石, “經濟서비스化의 現況과 서비스價格 上昇原因”,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4. 8.
19. 정인수, 『한국의 임금구조 -6·29 이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991.
20. _____, 『雇傭構造變化와 政策課題 —OECD 경협의 함의와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6.
21. 조우현, “경제력집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표본사업체 사례연구—”, 『勞動經濟論集』 제15권, 한국노동경제학회, 1992.
22. 조우현·강창희, “遊休人力과 人力難 竝存의 經濟分析”, 『勞動經濟論集』 제19권 제1호, 1996. 7.
23. 蔡昌均, “獨占·非獨占 部門別 勞動組合의 相對的 賃金效果”,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학위논문, 1993.
24. 黃호영,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요인에 관한 연구”, 『產業關係研究』, 한국노사관계학회, Vol. 6, June 1996.

25. Antos, J.R., "Analysis of Labor Cost: Data Concepts and Sources", J.E. Triplett, ed., *The Measurement of Labor Cost*,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3.
26. Dickens, W.T. and L.F. Katz, "Inter-Industry Wage Difference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in K. Lang and J.S. Leonard(1987).
27. Feige, E.L.,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the Underground Economy", in E.L. Feige(1988).
28. _____, ed., *The Underground Economies: Tax Evasion and Information Distortion*, Cambridge Univ. Press, 1988.
29. Fuchs, V.R., *The Service Economy*, NBER, Columbia Univ. Press, 1968.
30. _____, ed., *Production and Productivity in the Service Industries*, NBER, 1969.
31. Howard, M.C., *Modern Theories of Income Distribution*, Macmillan, 1979.
32. Inman, R.P., ed., *Managing the Service Economy*, Cambridge Univ. Press, 1985.
33. Katz, L.F. and L.H. Summers, "Industry Rents: Evidence and Implication", *Brookings Papers: Microeconomics 1989*, 1989.
34. Kravis, I.B., A.W. Heston, and R. Summers, "The Share of Services in Economic Growth", in F.G. Adams and B.G. Hickman, eds., *Global Econometrics: Essays in Honor of L.R. Klein*, MIT Press, 1983.
35. Krueger, A.B. and L.H. Summers, "Reflections on the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in K. Lang and J.S. Leonard(1987).
36. _____, "Efficiency Wages and the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Econometrica*, Vol.56, No.2, March 1988, pp.259-293.
37. Lang, K. and J.S. Leonard, eds., *Unemployment and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s*, Basil Blackwell, 1987.
38. Lindbeck, A. and D.J. Snower, "Wage Setting, Unemployment, and Insider-Outsider Rel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roceedings*, Vol.76, 1986, pp.235-239.

39. Mincer, J.,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BER, 1974.
40. Murphy, K.M. and R.H. Topel, "Unemployment, Risk, and Earnings: Testing for Equalizing Wage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in K. Lang and J.S. Leonard(1987).
41. O'Higgins, M., "Assessing the Underground Economy in the United Kingdom", in E.L. Feige(1988).
42. Yoo, Gyeongjoon, "An Analysis and Decomposition of Changing Labor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Ph.D. Dissertation Thesis at Cornell University, August 1995.